| | |
|---|---|
| 의안번호 | 2205846 |
| 의 뢰 인 | 서지영 의원 |
| 회 답 일 | 2024.12.05. |
| 추계번호 | 24C5360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Ⅰ.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36조<br>(비용의 보조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재량규정 |
| 2 | 안 제43조의3<br>(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 (제1항)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 재량규정 |
| | |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제3항)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br>(제5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 의무규정 |

| | | | |
|---|---|---|---|
| | |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1]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br>안 제43조의3<br>(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에 대한 특례와 도서·벽지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임[2]

○ 2023.12.31.기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06개소(전체 어린이집의 4.16%)이며, 56,812명의 아동(현원, 전체 어린이집의 5.61%)이 재원[3]

❑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및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였던 보조금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함

1) 안 제6조에 따라 어린이집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수당 등 비용 증가는 기관의 기본경비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봄
2)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3) 「2023 보육통계」(교육부) 참조

○ 개정안은 해산되는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에 대한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소요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해산하게 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유한 잔여재산 규모 및 잔여재산 중 보조금 비중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일정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규정
-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4]와 동 법 시행령은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면서 귀속된 재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 재산이 귀속될 주체가 변동되는데 따른 재정소요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인가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을 잔여재산의 규모 및 잔여재산 중 보조금 비중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또한, 안 제36조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외에 추가될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필요 예산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

- 2024년 현재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한 증·개축비, 시설 개·보수비, 장비비 등'을 우선 지원받고, '농촌아이돌봄 어린이집'으로의 선정,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양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

4)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 일부 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음[5])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사업들 외에 신규 사업이 실시되거나 기존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의 규모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 사회비용추계과 | 정혜승 | 이진우 |

❑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정혜승 | 02-6788-4627 | hs0387@assembly.go.kr |

5)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